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46

발의연월일: 2021. 2. 2.

발 의 자:이철규·최승재·김선교

윤창현 · 김정재 · 이주환

엄태영 · 한무경 · 권명호

구자근 · 정운천 · 백종헌

이양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사용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불법상품의 제작·판매 행위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유명성 획득을 위해 상당 시간 투자한 노력에 대한 무임승차이자, 우수한 품질을 기대하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이므로, 적절히 제재할 필요가 있음.

민법에 근거하여 이러한 무임승차행위를 일부 규제할 수 있으나, 이는 초상 등을 인격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이므로 위자료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만을 인정하다보니 유명인 등에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호로서는 한계가 있음.

또한 그동안 유명인의 초상 등을 소위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으나, 초상 등이 지니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상 권리의 양도가 불가능하여 유명인에게 투자한 기획사 등에 발생한 재산적 손실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더욱이, 현행 상표법은 성명이 포함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므로, 유명인의 성명을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 보호하면, 상표권자가 유명인 본인이 아닐 경우 퍼블리시티권 행사와 등록된 성명 상표에 대한 권 리행사가 충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한편, 최근 법원에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이 지니는 유명성을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로 인정, 이를 무단사용하여 화보집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하였음. 다만 이는 부정경쟁 방지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단사용 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에 대한 무단사용행위를 별도의 부정경 쟁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카목 신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 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 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 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7조제1항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한다.

법률 제17529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8조제1항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차목 및 카목"을 "차목, 카목 및 타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1.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신 설> 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 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 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 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 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카. (생 략) 타. (현행 카목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 등) ① ------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

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
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
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
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
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
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법률 제17529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
(아목과 <u>카목</u>은 제외한다)의 부
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
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
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

<u>,</u>
②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529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일부개정법률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일부개정법률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또 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 터 바목까지, 차목 및 카목, 제 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제18조(벌칙) ① • ② (생 략) 제18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및 1. ------카목, 카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 목 및 타목-----

2.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생략)

④·⑤ (생 략)